

발전기금관리규정

2009.09.01.제정	2011.04.18.일부개정	2011.11.01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
2014.03.28.일부개정	2014.06.16.일부개정	2017.12.01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
2018.08.31.일부개정	2019.04.30.일부개정	2019.10.01.일부개정	2020.07.01.일부개정
2021.06.01.일부개정	2021.11.01.일부개정	2022.04.01.일부개정	2023.02.25.일부개정
2024.01.26.일부개정	2025.06.30.일부개정	<u>2025.08.01.일부개정</u>	

<발전기금센터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본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교육, 연구 및 장학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되는 현금, 가상자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도서, 교육·연구·업무용 물품과 골동품·고서화 등의 문화재 등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부금(품)을 말한다. (개정 2025.8.1.)

②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발전기금 :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,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한 기금
2. 지정발전기금 :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 지정하여 건축, 장학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(단, 기부자가 수혜자를 지정한 장학금, 연구비 기금 등은 제외한다.)(개정 2024.1.26.)

제3조(주관부서) 기금의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는 발전기금센터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, 2019.10.01., 2020.7.1.)

제3조의2 (업무분장) (삭제 2019.4.30.)

제2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

제4조(설치) 기금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- 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 위원장은 발전기금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6.6.16., 2018.7.1., 2018.8.31., 2019.10.01., 2023.02.25.)
- ②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1.11.1., 2012.8.1., 2014.3.28., 2016.6.16., 2017.12.1., 2018.7.1., 2019.10.01., 2021.6.1., 2022.4.1., 2023.02.25.)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문, 기금 기부자, 학부모, 사회저명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은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,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·심의한다.

1.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영 및 관리
3.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4. 기금 유치 공헌자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기금 관리

제9조(접수) ① 기금은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, 입출금 관련 사항은 사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② 기증물품은 주관부서가 소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, 현 시가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인수하며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19.4.30.)

③ 부동산은 법인과 협의하여 인수하되, 자산평가는 지방세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참고한다.

제10조(기금의 운영) ① 기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른 교육사업에 사용하고, 교비 운영에 준하여 운영한다.

② 기획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4.3.28., 2018.7.1., 2021.6.1.)

③ 기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

제11조(회계처리) ① 기금은 본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,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한다.

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기부자 예우 및 공헌자 보상

제12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

제13조(기금 유치공헌자 보상) ①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모금에 공헌한 교내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 (개정 2021.11.1., 2025.6.30.)

② 삭제 (2025.6.30.)

제5장 기타

제14조(제반경비)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기금 모금액 또는 교비로 지출한다. (개정 2024.1.26.)

제15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지침 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 (개정 2025.8.1.)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,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, 제9조 제1항 제2항, 제10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개정 전 분할 입금되고 있는 기금 유치공헌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